

NH-Amundi 아세안 플러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63263)

|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 1 | 2 | 3 | 4 | 5 | 6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아세안지역의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신흥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에 따른 신흥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아세안 플러스 증권투자신탁1호 [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ASEAN 국가(태국,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관련 증권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획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 | | | | | | | | |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 |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 | | | |
| | 판매수수료 | 총보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0%이내 | 1.5 | 0.575 | 1.72 | 1,7644 | 279 | 465 | 661 | 1,082 | 2,332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1) | 없음 | 2.025 | 1.1 | 1.87 | 2,2892 | 235 | 481 | 740 | 1,297 | 2,951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이내 | 1.2125 | 0.2875 | 1.28 | 1,4542 | 198 | 353 | 516 | 866 | 1,907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 없음 | 1.425 | 0.5 | 1.47 | 1,6888 | 173 | 355 | 546 | 956 | 2,177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 (혹은 모두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 | | | | | | | | | |
| (주2) 종류 A형과 종류 C1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8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 | | | | | | | | |

|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22.12.21 ~ 23.12.20 | 21.12.21 ~ 23.12.20 | 20.12.21 ~ 23.12.20 | 18.12.21 ~ 23.12.20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1) | | 2006.12.20 | 0.02 | -1.26 | 3.92 | 2.24 | 1.09 |
| | | | 0.34 | -2.59 | 1.60 | 0.90 | 3.06 |
| | | | 9.85 | 10.85 | 10.57 | 13.42 | 15.80 |

| |
|---|
| (주1) 비교지수: MSCI AC ASEAN Index(KRW) 70% + MSCI Vietnam Index(KRW) 20% + Call rate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운용전문인력 (<u>23.12.20</u> 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개, 억원)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형,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정승호 | 1975 | 책임 (본부장) | 23 | 5,608 | 7.24 | - | 21.64 | -5.46 | 15 년 11 개월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본부에서 담당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부재시 담당 본부 및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
|---------|--|
| 투자자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 주요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원본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해외 증권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 신흥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 <p>환율 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자산은 외화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가 원화 대비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환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 | <p>시장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해외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업종의 환경 변화 등 기타 국제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 | | | | | |
| |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 | | | | | |
| <p>※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매입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시 30 분 이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15 시 30 분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 | | | | | |
| 환매수수료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p>환매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시 30 분 이전: 6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 15 시 30 분 경과 후: 7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 | | | | | | |
| 기준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 <td>과세</td><td> <p>수익자</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6년 8월 3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td></tr> </tbody> </table> | 구분 | 과세의 주요 내용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과세 | <p>수익자</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6년 8월 3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
| 구분 | 과세의 주요 내용 | | | | |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 | |
| 과세 | <p>수익자</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p> <p>2016년 8월 3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NH-Amundi 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 | | | | |
| 운용관련 위탁업자 | <p>회사명: Fullerton Fund Management Company Ltd. (설립년도: 2003년) 주 소: 3 Fraser Street #09-28 Duo Tower, Singapore 189352 연락처: +(65) 6808 4688 업무자문의 범위: 운용업무, 운용지시, 조사분석, 단순매매 주문업무 등</p> | | | | | | |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 | | | | | |
| | 모집. 매출 총액 | | | | | | |
| | 1 조 좌 | | | | | | |

| | | | | |
|------------|--|------------|---|-----------------|
| 효력발생일 | 2023년 12월 29일 |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6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 |
| | 판매수수료 | 수수료선취 | <p>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져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p> <p>*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p> <p>*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p> <p>**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9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11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p> | |
| | | 수수료미징구 | <p>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p> <p>*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p> <p>*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p> <p>**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9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1년 11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p> | |
| | | 수수료후취 | <p>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p>*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p> <p>*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 |
| | 판매경로 | 온라인 | <p>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 |
| | | 오프라인 | <p>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p> | |
| | | 온라인슈퍼 | <p>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p> | |
| | 기타 | 보수체감(CDSC) | <p>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p> <p>*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p> | |
| | | 무권유저비용 | <p>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p> | |
| | | 개인연금 | <p>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p> | |
| | | 퇴직연금 | <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p> | |
| | | 기관 | <p>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가 투자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p> | |

| | | |
|---|--|---|
| | |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
| 랩 | |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